

계약심사 실무편람



목 차

I. 계약심사 추진개요

1. 계약심사의 의의	7
2. 계약심사 대상 및 처리절차	9
3. 계약심사 실적	11

II. 분야별 계약심사 매뉴얼

1. 공사 원가심사	15
2. 용역 원가심사	27
3. 물품 원가심사	44

III. 주요 심사사례

1. 공사 심사사례	59
2. 용역 심사사례	77
3. 물품 심사사례	89

IV. 부 록

1.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99
2.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109
3. 조달청 인쇄비 기준요금	160
4. 분야별 원가산출 예시	173
5. 관련부서 협조사항	180
6. 계약심사 관련 질의응답	183



계약심사의 추진개요

1. 계약심사의 의의

2. 계약심사 대상 및 처리절차

3. 계약심사 실적



1

계약심사의 의의

1-1 목 적

- 계약심사는 사업비 원가산출 및 최저가 입찰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써
-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창의적 공법 적용 등을 통한 예산절감과 합리적인 저가심사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등
-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처리 지침

1-3 추진경과

- '08. 7. 1 : 계약심사팀 설치(4명)
- '08. 8. 25 :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 제정
- '08. 8. 29 :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공포
- '08. 9. 1 : 계약심사업무 개시(도)
- '09. 6. 24 :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 개정
- '09. 7. 1 : 계약심사2팀 설치(3명)
- '09. 7. 10 :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개정 및 사·군 계약심사

1-4 조직현황

○ 구성 : 2팀 7명

구 분	계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비고
계	7	3	2	2	
5 급	2	2			
6 급	2	1		1	
7 급	3		2	1	

○ 분장사무

- 계약심사1팀 : 도 발주사업 원가계산 심사·조정
- 계약심사2팀 : 시·군 발주사업 원가계산 심사·조정

1-5 운영방향

○ 계약심사의 전문성 강화

- 분야별 원가심사 전담인력 배치로 능동적 심사 추진
- 주기적인 전문교육으로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
- 계약심사기법 개발을 위한 정기적 연구·연찬활동 실시

○ 저가심사의 병행

- 원가구조를 알아야 합리적인 저가심사가 가능



2

계약심사 대상 및 처리절차

2-1 계약심사 대상 및 범위

○ 심사대상 기관

- 도 : 본청 및 직속기관, 의회사무처, 사업소
- 시·군 : 본청(구청 포함) 및 직속기관, 사업소
- 지방공기업, 출연기관(50%이상 출연기관)

※ 시·군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 사업에 한함

○ 심사대상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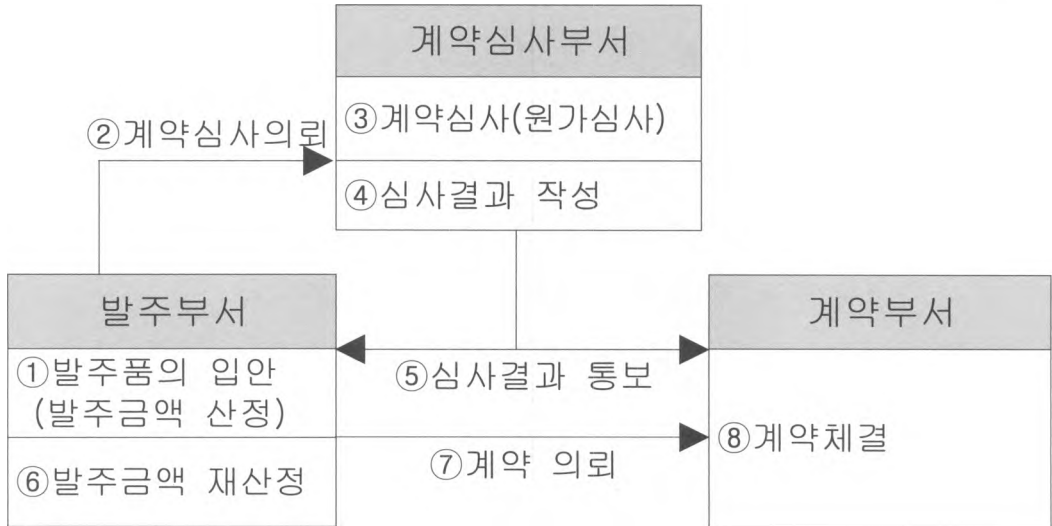
공 사	용 역	물 품	비 고
5억원이상 (전문 3억원)	2억원이상	2천만원이상	추정금액 기준

2-2 계약심사 제외사업

- 법령상 의무 조달발주사업(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의무 조달발주사업 외 일반적으로 조달계약 의뢰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 일반적인 재해복구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심사하며 그 처리기간이 10일내에 가능하므로 심사제외 대상이 아님
-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2-3 계약심사 처리절차

○ 계약심사 흐름도



○ 처리기한 : 10일

○ 업무처리 절차

- ① 심사요청서 접수
-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서류 미비 → 보완(발주부서)
- ③ 심사처리(원가산정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④ 심사결과(초안) 보고 : 팀장(필요시 과장)
- ⑤ 심사결과 요청부서와 협의 : 이견제시 → 재검토
- ⑥ 협조분야 심사내역 취합
- ⑦ 심사결과서(심사결과 요약서 및 주요 심사내용) 작성
- ⑧ 심사결과(최종) 보고 및 결재
- ⑨ 심사결과 통보(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 ⑩ 심사실적 관리

3

계약심사 실적

3-1 심사실적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409건	303,818	286,603	17,215	5.7%
2008	47	13,694	12,801	893	6.5
2009	362	290,124	273,802	16,322	5.6

3-2 분야별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409건	303,818	286,603	17,125	5.7%
공 사	114	229,774	217,792	11,892	5.2
용 역	59	33,676	30,953	2,723	8.1
물 품	236	40,368	37,858	2,510	6.2

3-3 기관별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기관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409건	303,818	286,603	17,215	5.7%
도	소계	304	179,119	170,343	8,776	4.9%
	본 청	85	117,576	112,680	4,896	4.2
	직속기관	79	21,040	19,757	1,283	6.1
	출연기관	140	40,503	37,906	2,597	6.4
시 · 군		105	124,699	116,260	8,439	6.8

※ 평균 처리심사기간 4.7일

- 공사 7.4일, 용역 5.2일, 물품 3.4일

II 분야별 계약심사 매뉴얼

1. 공사 원가심사

2. 용역 원가심사

3. 물품 원가심사

충청북도

1

공사 원가심사

1-1 심사 방법

-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공사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품셈 적용의 적정성 여부, 소요자재에 대한 적정 단가 적용 여부,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 원가를 재 산출함을 물론 창의적 공법 적용 등을 통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

1-2 공사의 분류

- 계약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문화재수리 · 기타공사 등으로 분류
- ①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 · 건축 · 산업설비 · 조경 ·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 ②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식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③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④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⑤ 문화재수리공사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등을 수리하는 공사
- ⑥ 기타공사 : 지하수 개발공사,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우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

1-3 공사심사 절차

① 심사요청서 접수	· 발주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내역화일 등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요구
③ 심 사	·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검토 · 기계경비산출서,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건축, 전기, 조경 등) · 업무 담당자 → 심사팀장(필요시 과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 (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팀장 → 과장 또는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1-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공사추정금액 · 토목, 건축 등 종합공사 : 5억원 이상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 종합공사 이외의 공사 : 3억원 이상 ○ 심사요청서(서식 1)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여부 -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 중기단가산출서, 신기술·신공법인 경우 관련자료 등 ○ 복합공사(토목, 건축, 조경, 설비 등)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 배부수량 확인
내역파일 확인	○ 내역서, 단가조사서, 일위대가서, 원가계산서의 연계공종 간 링크(연동체계) 여부 - 특히 일위대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일위대가의 경우 링크가 안 된 경우가 많음
기 타	○ 당해공사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2) 심사

① 원가계산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원가계산 작성 방식	○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방식 적정여부 ※ 참고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각종 제경비 요율	○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 제경비 산출 적정여부 ※ 참고기준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 「실적공사비제경비율」 조정계수
	○ 4대 보험료 및 각종 경비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참고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 안전관리비 계산시 관급자재비의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여부 ※ 참고기준 ·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계산시 산정하는 고정금액('예':1.81% 시 3,294천원)을 총공사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하지 않고, 분야별 공사(건축, 토목, 조정 등)에 포함하여 중복산정 되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② 내역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내역서의 수량 확인	○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수량 단위 오류적용으로 과다계상 여부 ○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할증 과다 여부	○ 일위대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 자재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공통 가설공사 등	○ 경비항목으로 분류할 공통가설공사를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공종 포함 여부	○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여부	○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실제 시공시 필요치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 ○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적용 오류 확인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일위대가에도 포함 계상하였는지 여부
작업부산물	○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직접공사비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③ 일위대가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실적공사비 적 용	○ 실적공사비 우선 반영여부 확인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 일반공사 70억원, 전문공사 7억원 이상
표준품셈 적 용	○ 재료 및 노무량 적용 내용 확인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울 적용 오류 여부 ○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여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 등의 내용 반영 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 실제 작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에 일관성 유지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 지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간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 자료 - 적용공법의 적정성 판단, 작업현장의 도로망

④ 단가조사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적정 단가 적용 여부	노임단가, 기계경비,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당시 발표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단가를 우선 적용 -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시중물가 조사지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단가보다 저렴한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단가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 확인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 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내 자재비 및 노무비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 단가적용시 부가세 및 제경비 제외하였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시방서 및 도면에 정해진 자재 단가 조사 여부
조립생산 자재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등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 - 제조 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 여부 (설비공사)
기 타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⑤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소요장비 적정성	- 소요장비 적정성 - 공사규모의 적정한 장비 선정 여부 -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항 목	검 토 내 용
단가 적용여부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기계 손료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⑥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조달구매 단가	○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 시중 물품 단가와 비교 확인 -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 확인
시중자재 단가	○ 시중물가자료 활용 - 가격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전적 · 지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물품인도조건 확인(상차도, 도착도 등) · 대량 사용 자재는 별도 전적처리 가능
전적단가	○ 전적단가 확인 - 제작 및 특수규격 자재인 경우 전적단가 활용 - 2개 이상의 업체 전적서 징구 가격 비교 -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가격	□ 장비가격 확인 -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 수입장비는 환율 적용 장비가격 환산 - 국내 미등록 장비 ·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 장비적용 손료 결정

1-5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음·진동 규제법
- 지하수법

2) 예규, 고시, 지침 등

- 건설사업대가기준(국토해양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측량용역의 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지식경제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3) 실거래가격적용 관련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표한 실적공사비
- 조달청장이 공표한 가격정보

4) 설계관련 공통대가

-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 (건설행정부서)
- 상수도공사 일위대가(상수도관련 부서)
-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 자체 건설공사 설계기준
-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격
- 전문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5) 노임단가적용 기준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측량 노임단가(국립지리원)
- 엔지니어링노임단가(과학기술부)
- 감리노임단가(한국건설감리협회)

6) 제경비율 산출근거

- 조달청장이 공표한 제비율
- 관련 법령에 의한 제비율
 - 산재보험료율 등 고시
 - 4대보험료율 적용기준 등

7) 품셈 등 적산 기준

- 표준품셈(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 건설신기술품셈(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조경공사 적산기준(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등), 공공기관 적산 · 견적기준

8) 관련부서 및 인터넷 사이트 등

-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등)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울산광역시 등)
- 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자재단가 및 관련법령 확인
- 건설기술연구원(건설품셈 및 실적공사비 관련)
- 건설계약연구원(www.csr.co.kr)
 - 기계경비산출, 질의응답 유권해석, 제비율 적용 기준 등
- 대한건설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 한국조달연구원
- 한국지방계약학회

<예시>

공사 원가계산서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 설 비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 상 비				
		안전점검비				
		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순 원 가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원 가						
공 사 손 해 보 험 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예시>

실적공사비 총괄표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2

용역 원가심사

2-1 심사 방법

-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용역원가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와 설계 내역서 등을 근거로 노무비 기준단가 적용 적정여부, 경비항목의 수량 및 단가 적용 적정여부, 불필요한 비목 포함여부, 재료비 소요자재에 대한 적정 단가 적용여부, 설계서간 불일치 및 오류 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

2-2 용역의 분류

- 「지방계약법」상의 용역이라 함은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수리 등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그 외 일반용역으로 분류
- ①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 ② 건설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 ③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2-3 용역심사 절차

① 심사요청서 접수	· 발주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요구, 서류배분
③ 심 사	· 원가계산서, 과업내역서 등 단가산출 적정성 검토 · 용역의 방법 및 기타 사항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팀장(필요시 과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 (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팀장 → 과장 또는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2-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심사제외 사업 - 심사대상 금액 미만인 사업 등
제출서류 확 인	○ 심사요청서, 원가계산서 ○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함) 등 심사 에 필요한 서류 누락여부 - 설계내역서, 과업내용서, 추가 업무관련 자료 등 - 기타 참고자료(적용근거, 견적서 등) (누락시 보완요구)
내역화일 (엑셀문서) 확인	○ 내역서, 투입인원산출서, 적용분야의 연계(연 동체계) 여부 (미연동시 보완요구)
기 타	○ 당해용역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2) 심사

(1)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검토

① 학술연구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 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과약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여부 ○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여부 ○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및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여부 ○ 연구원의 업무 및 월수 적정산출여부 ○ 여비 등 경비 산정의 적정성여부 ○ 도 산하 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시 - 일반관리비 적정여부 - 정규직인 경우 인건비 중복계상여부 ○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제 요율 적정여부

② 건설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 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 여부 -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 여부 ○ 적용대가기준 및 적용노무비의 타당성 여부 -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 노무비중 상여금, 제수당, 퇴직충당금 등의 적정 산정 여부 ○ 연금 및 보험료율의 적정산정 여부 ○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적정 여부 ○ 기타 기술용역 여부 등

(2) 산출내역 검토

① 산출내역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현장 및 상황의 적합성	○ 현장조건에 맞는 품셈적용 여부 ○ 주·야간 등 실 상황 적용 여부
단가적용 오류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운반비 등을 이중계상 하였는지 여부 ○ 견적가 적용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중복 적용 여부 ○ 노무비에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고 다시 제경비 등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 노무비의 월단가(M/M) 산정시 적용 기준일수가 적정한지 여부(정보통신용역) ○ 견적가 적용시 제경비, 기술료, 이윤, 부가가치세의 적정(중복) 적용 여부
공종별 물량 확인	○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물량 상이 여부 ○ 수량단위 오류로 인한 과다계상 여부
거래실례가 적용	○ 거래실례가격 우선 반영 여부 확인
표준품셈 적용 오류	○ 재료 및 노무량 적용상 내용 확인 (예 : 품셈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미반영 등)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등 오류 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일관성 유지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 타	○ 당해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② 수량 및 단가산출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적정 단가 적용 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등 심사당시 발표된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시중물가지 단가와 비교)하였는지 여부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적용 시 2개 이상의 단가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 확인	- 견적가 적용시 2개 이상의 업체견적을 받아 적용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상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 부가세 및 제경비 등이 이중계상 되었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도면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적합한 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운전경비 산정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주연료 및 잡재료, 조종원 수량은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예)폐기물처리용역 등
작업량 산정	- 시간당 작업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계수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공사 등 수량발생원과 물량일치 여부 - 단위환산에 따른 오류 및 과다산출 여부
기 타	당해 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2-5 참고 자료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2) 기타 자료

- 조달청 표준용역 관련자료 및 기준(www.pps.go.kr)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 각종 협회의 원가산정 공표자료(기획재정부 등록기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2006.5.25)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교육과학부 공고)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 기타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위생관리협회 등
- 시중노임단가
 - 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 제조부분(중소기업중앙회 공표자료)
- 기타 원가분석에 필요한 자료 등

<예시>

기술용역 원가계산서

◦ 용역명 :
◦ 용역기간 : 200 ~ 200 (개월) (단위 : 원)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항목				
직접 노무비				
	소계			
직접 경비				
	소계			
제 경비 ()%				
기술료 ()%				
공 급 가 액				
손 해 배 상 보 험 료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예시>

일반용역 원가계산서

$$\circ \quad \textcircled{\text{H}} \quad \text{U} \quad \text{D} \quad :$$

◦ 용역기간 : 200 . . . ~ 200 . . . (개월) (단위 : 원)

구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영 요 원 가 비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예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 용역명 :

◦ 용역기간 : 200 . . . ~ 200(개월)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소 계			
②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연 구 활 동 비			도립대만 해당
	소 계			
③ 순 원 가 (①+②)				
④ 일반관리비 ()%				
⑤ 이 윤 ()%				
⑥ 공 급 가 액 (③+④+⑤)				
⑦ 부가가치세 ()%				
용역비 총계				

<예시>

학술연구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해당사항만 기재)

1. 인건비

가. 총 액

구 분	계	기준단가 기본노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금				
			연 근무수당	야 간 근무수당	휴 근무수당	상 여 금	퇴 직 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도립대 교수 정규직 인건비는 제외, 충북개발연구원 정규직의 인건비는 자체 방침 적용

나.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노임

구 분	담당과업	종사인원	과업기간(월수)		기준단가 (월단위)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책임연구원						
	계					
연구원						
	계					
연구보조원						
	계					
보조원						
	계					
합 계						

※ 담당과업은 연구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할 것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액

(1) 연장근무수당

구 분	연장근무사유	기 간 (일수)	인원수		시간수		소요금액	
			1 일	누 계	1인1일	누 계	시간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2) 야간근무수당

구 분	야간근무사유	기 간 (일수)	인 원 수		시 간 수		소요금액	
			1 일	누 계	1인1일	누 계	시간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3) 휴일근무수당

구 분	휴일근무사유	근무일수	인 원 수		소 요 금 액	
			1 일	누 계	1인1일	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4) 상여금

구 분	지급대상인원	기본급월액	지 급 율 (연간)	소요금액	
				1인당(월)	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5) 퇴직충당금

구 분	지급대상인원	월 기본노임	월 상여금	소 요 금 액	
				1 인 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2. 여비

가. 국내여비

(1) 출장내역

구 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출장기간	
				박 수	일 수
책임연구원			명	박	일
연구원			명	박	일
연구보조원			명	박	일
계					

(2) 소요금액

구 분	1인당					누계
	계	숙박비 (박수×단가)	일비 (일수×단가)	식비 (일수×단가)	운임 (일수×단가)	
책임연구원		()	()	()	()	
연구원		()	()	()	()	
연구보조원		()	()	()	()	
계						

나. 국외여비

(1) 출장내역

- ① 출장목적 :
- ② 출장인원 : 명(책임연구원 : 명, 연구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 ③ 출장지역 :
- ④ 출장기간 : ~ (박 일)
- ⑤ 주요일정

일 자	활 동 사 항	비 고

(2) 소요금액

구 분	인원수	1 인 당						누 계
		계	항 공 료 (실비계산)	일 비 (일수×단가)	숙 박 비 (박수×단가)	식 비 (일수×단가)	준비금 (기준액)	
책임연구원				()	()	()	()	
연구원				()	()	()	()	
연구보조원				()	()	()	()	
계								

3. 유인물비

건 명	인쇄방법 및 내용		규 격	부 수	면 수	단 가	소요금액
	용지종류	색도,특수사양 등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계							

※ 읍셋인쇄인 경우 별첨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조달청양식)를 작성 첨부할 것.

4. 전산처리비

사용품목	규 격	소 요 량	단 가	소요금액
계				

※ 토너 가격 산출시 프린터 및 복사기의 제품명과 기종을 기재할 것

5.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품 명	용 도	소 요 량	단 가	소요금액
계				

6. 회의비

가. 회의개최내역

구 분 (회의명칭)	개최목적	개최회수	참여인원(1회당)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방청인
계						

나. 소요금액

구 분	1회당					누계
	계	참석수당 (인원수×단가)	발표수당 (인원수×단가)	음료식대 (인원수×단가)	기 타	
		()	()	()		
		()	()	()		
계						

7. 임차료

임차대상	임차목적	임차회수	소요비용	
			1회당	누계
계				

8. 교통통신비

가. 시내교통비

출장목적	출장인원	출장회수		소요금액	
		1인당	누계	1회당	누계
계					

나. 우편료

우편종류	발송목적	발송건수	소요금액	
			건당	누계
계				

다. 전신전화비

구 분	사 유	소요금액	산출근거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계			

9. 감가상각비

가. 산정금액 :

나. 산출근거 :

10. 연구활동비 (도립대만 해당)

구 분	인원	도립대 교수 인건비 (1인당)				소요금액 (인원*인건비*7%범위)
		계	기 본 급	상 여 금	퇴직총당금 및기타수당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계						

※ 도립대교수의 인건비는 원가(연구활동비)산출을 위한 계상만 하고 실제 지급은 하지 아니함

11. 일반관리비

순 원 가			일반관리비율 (%)	소요금액 (순원가*일반관리비율)
인 건 비	경 비	계		

- ◆ 인건비 중 도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하는 도립대 교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 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계상만 하고 실제지급은 하지 아니며, 충북개발연구원 정규직 인건비는 자체방침 적용

※ 제출서류

1. 연구원 명단 및 이력사항(학력, 경력 등) : 수의계약인 경우
2. 비목별 기초계산서 금액·수량 산출기준 근거자료(견적서 등)
3.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오프셋인쇄인 경우)
4. 도립대 교수 등 정규직 인건비 내역서(도립대,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우)

3 물품 원가심사

3-1 물품의 개요

- 현행 법규상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명확히 구분할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
-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당해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물품(완성품) 구매의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그 자격이 있음이 원칙

3-2 물품의 분류

- ① 제 조 : 특수규격품의 제작설치 및 수리 등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물품제조를 위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심사
- ② 완제품 : 완제품구매, 임차(부동산 제외) 등 물품 구매시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물품의 적정 구매가격을 심사
- ③ 인쇄물, 기획편집 : 책자, 리플릿, 전단지, 캘린더,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의 사양에 따라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거 제조원가를 산출하며, 기획 편집(디자인)요금의 별도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시중거래가격을 준용하여 적정가를 산정함

3-3 물품구매 등 심사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발주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내역파일 등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요구, 서류배분
③ 심 사	· 사양서 검토, 가격조사(조달가, 견적가, 물가정보지 등) · 제조원가분석 검토, 계약방법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팀장(필요시 과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 발주부서와 협의 (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 제조 : 일위대가서, 제조원가계산서 - 물품 및 인쇄 :산출금액 내역서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팀장 → 과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3-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1건 구매 금액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심사제외 사업 - 심사대상 금액 미만인 사업 등
제출서류 확 인	○ 산출기초조사서, 제조원가계산서(일위대가표 포함), 시방서, 사양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 해당여부 확인 ○ 서류 미비시 발주부서에 보완 요청(유선 혹은 문서)
기 타	○ 심사전 정확한 가격조사를 위해 사양상의 의문사항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질의·과약

2) 심사

① 물품(제조)

항 목	검 토 내 용
산출기초 조사서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적정가격으로 적용 - 조달청 조사가격, 가격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견적가격, 출장조사가격 등

항 목	검 토 내 용
원가계산서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산출기초조사서에 의한 단위당 최저 가격을 적용, 소요량을 곱하여 함 - 간접재료비 : 잡재료 등은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함 - 작업설·부산물 등 : 고재 발생 처리시 조사가격 중 최고가격을 적용하여 감 계상함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공종별 노무량에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 산출, 특수한 공정은 유사 공정 등을 적용 ※ 공사, 제조부분을 분리 각각의 노임 적용 - 간접노무비 :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 ※ 예) 조달청 공사부분 비율 9.8%(당해년도 비율적용) ○ 경 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경비의 합계액 - 기타경비 : 예) 조달청 공사부분 비율 5% ○ 일반관리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 → [(재료비+노무비+경비)X비율] : 조달청 4.7%이내 적용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의 제조 7% 이내 ○ 이 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비율] : 제조구매25% 이내

※ 제조물품을 설치할 경우 제조회사원가계산서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 여부를 확인,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

② 물품(완제품)

항 목	검 토 내 용
산출기초 조사서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최저가격으로 적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물가정보지, 물가자료, 월간거래가격, 유통물가) - 출장 조사가격 ○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으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심사대상 물품별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발주부서 요청금액과 심사금액 비교표 작성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조사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총계집계 후 절감액 산출 - 특히, 농수산물 등 면세대상의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 확인

- 다품종 물품구매시 업체(업종) 등을 고려 품목별로 분리구매
 - 다품종 물품 구매 추진시 물품의 용도별 유사성, 판매처의 취급 전문성 및 자격 등을 간과하고 통합하여 일괄로 물품 가격을 조사,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발주부서는 업종별로 분리 발주되도록 사전협의

예1) 전기재료 · 프린터잉크 · 문구류 등 혼합구매

예2) 각종 시약류 · 과학기기류 등 혼합구매

③ 인쇄물 · 기획편집

항 목	검 토 내 용
인쇄물 규격 산정	○ 인쇄물 규격(절수) 산정 적정 여부 - 인쇄물의 가로x세로 규격을 캐드화면 4x6전지 및 국전지 규격에 시연하여 적정규격 산정 ※ 낱장인쇄물, 제본(스프링제본은 예외)을 요하는 책자 인쇄물 여부에 따라 규격 산정이 달라짐 (예: 12절 규격은 제본하려면 국8절로 산정, 18절 규격은 제본하려면 16절로 산정)
용지단가 산정	○ 용지의 종류에 따른 가격 적정 여부 - 물가정보지 해당월 단가 적용 - 물가정보지의 특수지는 지류업체 견적가 적용 ※ 지류생산업체, 수입지 판매업체 고시가는 실거래가가 아님 - 국판(국전지)은 4x6전지 단가의 69.4% 적용 ※ 물가정보지는 4x6 전지 기준임 - 용지 평량과 색깔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므로 색깔군까지 파악, 조사해야 함. - 손지율을 인정하므로 작업설은 용지대에서 감적용
전자조판 및 편집료 산정	○ 전자조판 및 편집료의 적정 여부 - File 제공의 겨우 책자 내지 면수에서 10% 감조정 - 조판료는 실규격 단가 적용 (예: 12절인데 제본을 고려하여 국8절로 규격 산정한 경우 조판료는 실규격인 12절 단가 적용. 봉투의 경우 실조판량을 감안하여 조판단가 조정) - 조판할증 또는 감액요인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조정 - 추가인쇄의 경우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제외함 - 기획편집료(디자인)를 별도 지출할 경우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기획편집료에 포함되므로 산출항목에서 제외

항 목	검 토 내 용
필름출력비 및 인쇄판대 산 정	○ 필름출력비와 인쇄판대 산정 적정 여부 - 일반적으로 표지 4절 내지 2절로 산정(국판은 국4절 국2절) ※ 국2절, 국4절은 2절, 4절 인쇄판 단가의 69.4% 적용 - 인쇄물량, 날개표지, 양면인쇄 여부에 따라 2절 또는 전지 인쇄로 조정 - 표지는 용지소요량이 5연 이상 양면인쇄일 경우 필름출력과 인쇄판대를 2대로 산정
인쇄료 산 정	○ 할증(두꺼운 후지, 박엽지, 베다인쇄, 별색인쇄 등), 감산 요인(국판계열 인쇄)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적용 ○ 인쇄통수에 따른 인쇄료 단가의 적정여부 검토, 적용 ※ 이 때 인쇄통수는 용지소요량(연)×연당통수(2절 인쇄는 1,000통/4절 인쇄는 2,000통/전지인쇄는 500통)
조달기준 외 가공비와 기획편집료 산 정	○ 조달기준 이외의 가공비 적정여부 산정 - 하드카바 합지가공비는 규격과 부수에 따라 달라짐 - 봉투가공비는 규격봉투 여부와 물량에 따라 단가 상이 - 중철제본료는 면수, 규격에 따라 단가 상이함 - 양면테이프 가공비는 수작업이므로 물량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큼 - 리플릿 등 접지비는 특수접지 여부, 수량에 따라 다름 - 용지 재단비용은 조달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 표지날개 접지비는 제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단 250g이상 두꺼운 후지는 오사가공비를 산정할 수 있음) ○ 기획편집디자인료 산정 - 기획디자인비는 면당 거래단가×면수 또는 전자편집디자인공 노임×인원×작업일수 적용 - 번역 감수료는 한국통번역센터 등 번역전문기관 견적이 적용 - 사진촬영, 일러스트 등은 컷수, 규모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 교정쇄, 시안출력 등은 규격, 면수에 따른 평균거래가 적용

항 목	검 토 내 용
기타 산정 오류 검 토	○ 미색모조 80~100g, 양면1도 인쇄는 경인쇄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읍셋인쇄로 산출한 경우에는 경인쇄로 인쇄방법 조정 ※ 부수가 작고 면수가 많은 책자의 경우 경인쇄와 읍셋인쇄의 산출금액의 차이가 큼(경인쇄가 훨씬 저렴) (단, 미색모조지에 양면1도 인쇄이지만 사진이 다량 삽입되는 책자, 제본방법이 반양장인 경우는 읍셋인쇄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함. 또한 매트지, 라이온코트지, 아트지, 뉴플러스지 등은 경인쇄가 불가함에 유의)
일반관리비 와 이윤 요율 조 정	○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요율 적정 적용 여부 - 읍셋인쇄의 경우 일반관리비 14%, 이윤 25%이내 ※ 이윤 계상시 재료비(용지대 등)제외 여부 확인 - 경인쇄는 면당 단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기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 기획편집료는 일반관리비 5%, 이윤 10% 적용

3-5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등)

2) 기타 자료

- 조달청 가격정보, 시중 물가정보지, 견적가격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노임, 건설공사 표준품셈

<예시>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illegible]

<예시>

수입원가계산서(수입완성품)

○ 품 명 :
○ 규 격 :

- 수량 :
- 수입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 고
제 조 원 가	물 자 대	FOB가격			수입면장의 외화표시가격에 금 융결제원의 기준환율/재정환율
		운임(해상/항공)			유사실적요율
		보험료			유사실적요율
	수 입 부 대 비 용	소 계			CIF가격
		신용장개설수수료			FOB가격 * 요율
		통관료			CIF가격 * 요율
		보세창고료			(CIF + 관세)*(기본요율 + 1일 할증 * 보관일수)
		하역료			하역요율
	국내운반비			국내운반요율	
	소 계				
일반관리비 ()%					(물자대+수입부대경비)*요율
이 윤 ()%					(수입부대경비+일반관리비)*요율
수입제세			관세		물자대 * 관세율
			특별소비세		(물자대+관세) * 특소세율
			교육세		특소세액 * 교육세율
			소계		
부 가 가 치 세					(물자대+수입부대비용+일반관리 비 +이윤+수입제세) * 부가세율
총 계					

<예시>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단위	산 출 금 액			구성비	비고
				수 량	단 가	금 액		
제조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로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예시>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예시>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III

주요 심사사례

1. 공사 심사사례

2. 용역 심사사례

3. 물품 심사사례

충청북도

1. 공사 심사사례

- 1- 1. 도로 확·포장공사
- 1- 2. 도로 위험구간 개선공사
- 1- 3. 도로 보행환경 조성공사
- 1- 4.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 1- 5. 하수관거정비공사
- 1- 6. 생태하천 복원사업
- 1- 7. 연구시설 신축공사
- 1- 8. 공예공방 건립공사
- 1- 9. 교육관 건립공사
- 1-10. 체육시설 돔 설치공사
- 1-11. 공연시설 보수공사
- 1-12.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 1-13. 산업단지조성 전기공사
- 1-14. 상수도시설 계측제어공사
- 1-15.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 1-16. 문화재 보수공사

1-1 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군
- 공사개요
 - 도로확포장 L=2.3km, B=8.0m
 - 배수암거 L=624m
 - L형옹벽 L=193m
- 발주유형 : 토목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438,631	2,117,897	320,734	13.15%

☐ 적용기준 및 법규

- 2009년 건설표준품셈
- 충청북도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 문양거푸집등 중복 계상된 수량 조정
 - 문양거푸집은 거푸집의 한 유형으로 중복수량 감 조정
- 콘크리트 타설 적용 기준 조정
 - 암거, L형옹벽의 콘크리트타설 : 직접타설 → 펌프차 타설
- 현장사무실 규모를 직접노무비 총액기준 규모로 조정
- 미끄럼방지포장 구간 시설기준에 의거 조정
 - 신설도로 마찰계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을 충족
 - 내리막 경사 곡선부등 사고예방 차원의 일부 구간으로 조정
-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강관비계 외 34개 품목

1-2 도로 위험구간 개선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도 사업소
- 공사개요
 - 도로 선형개량 L= 1.12km, B= 8.0m
 - 흙막기 27,347m³, 흙쌓기 5,500m³
 - 아스콘포장 121.5a
- 발주유형 : 토목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449,236	1,301,036	148,200	10.2%

☐ 적용기준 및 법규

- 2009년 건설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 충청북도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 구조물 산출 수량 조정
 - 현장여건상 설치가 불필요한 가설방음벽(L=62m) 시공제외
- 기계경비 조정 : 표준품셈 적용
 - 굴삭기와 대형브레이커 조합시 잡품비율 16%
- 일위대가 조정 : 표준품셈 적용
 - 사토운반비 : 덤프트럭 이동속도를 도로기준에 맞게 조정
 - 가설방음벽, 안전시설목 : 가설 자재에 대한 손율 적용
- 자재가격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제가격 조사
 - 경유 외 43개 품목

1-3 도로 보행환경 조성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도 사업소
- 공사개요
 - 도로 확포장 및 인도설치 L= 1.03km, B= 20.0m
 - 상수관로 L= 1,545m
 - 아스콘포장 138a, 소형고압블록포장 49a
- 발주유형 : 토목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810,320	1,625,888	184,432	10.2%

☐ 적용기준 및 법규

- 2009년 건설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 충청북도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 토공 산출 수량 조정 : 토공 수량 유동표 적용 오류 조정
 - 구조물깨기 수량은 흙깎기 수량에 감산 적용
 - 표토제거 수량은 흙쌓기 수량에 가산 적용
- 기계경비 조정 : 표준품셈 적용
 - 굴삭기와 대형브레이커 조합시 잡품비율 16%
- 일위대가 조정 : 도 설계기준 적용
 - 터파기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기계터파기 적용
- 자재가격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제가격 조사
 - 혼합골재 : 견적가 → 가격조사지
 - 경유 외 47개 품목

14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군
- 공사개요
 - 송수관로 L= 2.2km(D=250~400mm)
 - 배수관로 L=41.7km(D= 50~400mm)
 - 배수지 3개소
- 발주유형 : 토목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557,790	6,962,130	595,660	7.88%

☐ 적용기준 및 법규

- 2009년 건설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 충청북도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 제경비요율 실적공사비 제경비 기준으로 조정
 - 안전관리비, 기타경비를 기초금액 상한비율 이내로 적용
- 기존 도로부 골재 재활용(충청북도 도로설계기준 적용)
 - 기존도로 골재를 포장복구시 동상방지층재로 유용
- 차량통제를 위한 교통신호수는 예정공기 기간내 조정 배치
- 하천부 관로매설시 현지여건을 반영 가물막이 구간 조정
 - 하천부 전 구간에 대한 가물막이를 유수 횡단구간만 반영
- 실적단가 적용 기준시점 조정 : '09상반기→'09하반기
-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볼밸브 외 13개 품목

1-5 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군
- 공사개요
 - 하수관거정비 1식
 - 오수관로(200~300mm) L=3.6km
 - 배수설비(100 ~ 150mm) 288세대
- 발주유형 : 토목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366,121	2,152,828	213,293	9.01%

☐ 적용기준 및 법규

- 2009년 건설표준품셈
- 충청북도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 터파기등 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조정
- 단가산출 및 적용기준 조정
 - 기존도로 골재를 선택층재로 유용
 - 기존골재 유용에 따른 사토량 절감
 - 교통신호수, 안전휀스, 야간유도등 등 교통안전관리비 항목은 경비성 항목으로 조정
 - 조립식간이흙막이(SK패널)적용 단가를 시공업체 제시단가를 조달청 제공 시장 시공단가로 조정
-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도로용 페인트 외 6개 품목

1-6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군
- 공사개요
 - 생태하천복원 L=2.67km
 - 호안블럭 969m, 산책로 616m
 - 목교5개소 및 여울낙차공 13개소
- 발주유형 : 토목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188,400	978,900	209,500	17.63%

☐ 적용기준 및 법규

- 2009년 건설표준품셈
- 충청북도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 징검다리돌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 의한 전석쌓기로 조정
- 관목류 식재 밀도를 고려 단식에서 군식으로 조정
 - 표준품셈에 의거 기준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 군식으로 적용
- 터파기, 되메우기등 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조정
- 사토 및 골재운반 덤프트럭 이동속도 조정
- 트레일러 및 자주식 중기운반을 실제 현장투입 장비를 고려 운반횟수 조정
-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징검다리돌(포천석) 외 5개 품목

1-7 연구시설 신축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도
- 공사개요
 - 규 모 : 3,349.74㎡(건축 연면적 1,126.27㎡)
 -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
 - 내 용 : 사무동(722), 연구동(330), 야외사육지(1,778) 등
- 발주유형 : 건축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275,264	2,041,670	233,594	10.27%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08년 건설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산출기준 조정 : 표준품셈 근거
 - 콘크리트타설(펌프차) 노무비 및 펌프차 작업능력 조정
 - 덤프트럭의 천막덮기 및 해체시간을 자동덮개로 조정
-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제가격 조사
 - PE이중벽관 외 5종
- 원가계산 제경비 조정 : 안전관리비
 - 관급 포함 비율 → 관급제외 1.2배
- 현장여건에 맞는 공종 변경
 - 강관비계매기 → 강관틀비계매기
- 원형거푸집 1회를 2회로 조정

1-8 공예공방 건립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군
- 공사개요
 - 연면적 : 554m²
 - 규 모 : 지상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슬래브
- 발주유형 : 건축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49,923	506,352	43,571	7.92%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09 건설공사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관급자재를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별도의 부지조성공사로 인한 불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처리 공정 제외
- 공사기간에 의한 강관비계 존치기간(6개월→3개월) 조정
-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 조정
 - 공방, 창고, 휴게실의 바닥마감재 화강석 → 데코타일로 변경
- 이중 산정된 타일압착불임의 청소 및 비빔품 제외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포천석 판재 외 19개 품목의 자재가격 조정

1-9 교육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군
- 공사개요
 - 연면적 : 2,191㎡
 - 규 모 : 지상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슬래브
- 발주유형 : 건축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690,500	3,503,082	187,418	5.07%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09 건설공사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관급자재 조달수수료를 제외하여 재 산정
-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 조정
 - 이중 산정된 타일압착붙임의 청소 및 비빔 품 삭제
 - 과다 계상된 수성페인트 수량 및 품 조정
 - 과다 계상된 SIP장비 조립 및 해체비 1/2 조정
- 아스콘재료비에 대한 운반비 삭제(현장도착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스틸그레이팅 외 59개 품목의 자재가격 조정

1-10 체육시설 돔 설치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군
- 공사개요
 - 연면적 : 7,613m²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정구장 8면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막구조/슬래브
- 발주유형 : 건축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323,201	1,212,079	111,122	8.4%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09 건설공사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 터파기 공법 및 잔토처리 운반거리 조정
 - 기계(90%)+인력(10%) 터파기를 기계(100%)로 변경
 - 잔토 운반거리(건축10km, 토목4km)를 4km로 일괄 적용
-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 조정
 -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경량칸막이 철거 품 60%로 조정
 - 재료비에 시공비가 포함된 적산목 붙이기의 노무비 삭제
 - 이중 산정된 타일압착붙임의 모르타르 비빔 품 삭제
 - 과다 계상된 기계설비 배관 및 위생기구설치 품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스테인리스 강관 외 33개 품목의 자재가격 조정

1-11 공연시설 보수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군
- 공사개요
 - 연면적 : 19,740m²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내 용 : 관람석 확대, 내부마감 및 음향설비 교체 등
- 발주유형 : 건축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471,985	3,292,157	179,828	5.18%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09 건설공사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 강관조립식말비계 및 강관비계 존치기간 조정
 - 공사 예정공정표에 의거 6개월 → 3개월 조정
- 이중 산정된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운반비 삭제
-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 조정
 - 과다 계상된 내부 벽체 및 천정 마감재 철거 품 조정
 - 단풍나무후로링 설치 품 마루널깔기 품으로 조정
 - 목공사 공종의 먹매김 품 시공 여건을 고려 마무리 먹매김 품으로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적용
 -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외 20개 품목의 자재가격 조정

1-12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출연기관
- 공사개요
 - 연면적 : 1,491㎡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내 용 : 내부마감 교체 및 인테리어 등
- 발주유형 : 실내건축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66,113	310,024	56,089	15.32%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09년 건설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제가격 조사
 - 수성페인트 외 6종
- 작업부산물(고철, 스테인리스 등) 공제단가 시중 최고단가 적용
- 현장여건에 맞는 공종 변경
 - 기존바닥위 데코타일 붙임 → 바닥 청소 후 왁스시공
- 고가의 수입품 자재를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자재로 변경
 - 자작나무합판 → 인테리어벽판넬

1-13 산업단지 전기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도
- 공사개요
 - 가로등 및 보안등 493본, 제어반 20면
 - 공원등 38본, 제어반 4면
 - 교통신호설비 8개소
- 발주유형 : 전기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815,132	1,712,431	102,701	5.66%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09년 건설·전기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산출기준 조정 : 표준품셈 근거
 - 합판거푸집 4회 → 합판거푸집 6회
-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제가격 조사
 - 내수합판 외 53종
- 잔토처리 방법 변경
 - 기계 90%+인력 10% → 기계 100%

1-14 상수도시설 계측제어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군
- 공사개요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제어계측공 1식
 - 유량계등 계측제어 설비
 - CCTV설치, 원격제어장치 설치
- 발주유형 : 계측제어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01,220	354,380	46,840	11.67%

☐ 적용기준 및 법규

- 2009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
- 2009년 건설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 적용노임단가 기준시점 조정
 - '09상반기('09.1.1) → '09하반기('09.9.1)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 제경비 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반영
- 수위계, 금구설치, 하우징설치, 적외선 감지기 설치품을 전기·정보통신품셈에 의거 단위인력 조정
- PLC프로그램 시운전비는 관련공사 시방서에 의거 도급자 시행(시운전비 설치자 부담) 공종으로 시운전비용 제외
-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유량계 외 3개 품목

1-15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사·군
- 공사개요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식
 - 설치용량 50KW
- 발주유형 : 전기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45,651	134,714	10,397	7.51%

☐ 적용기준 및 법규

- 2009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
- 2009년 건설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 수량산출 오류 조정
 - 철골가공조립, 철골세우기, 잡철물제작설치 등 자재할증에 따른 수량할증분 감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근거 조정(표준품셈)
 - H형강부재(Roollled shape)의 철골가공조립시에는 기본 철골 공수의 71%로 산정
 - 잡철물 제작설치시 제작인력품을 기준으로 공구손료 산정
 - 철골가공시 일일 작업기준 작업량 조정 : 8 → 15ton/일
- 자재가격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각재(미송) 외 9개 품목

1-16 문화재 보수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군
- 공사개요
 - 내 용 : 산성보수 1식
 - 성벽 보수 L=94m
 - 잔디식재 370㎡, 잡목제거 1,045㎡ 등
- 발주유형 : 문화재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50,000	500,940	49,060	8.92%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09 건설공사 표준품셈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 자재(석재)의 소운반 방식을 인력에서 경운기운반으로 조정
- 과다 계상된 설치 품 조정 및 삭제
 - 강관비계매기 설치 및 잔디 붙임 품 조정
 - 진디붙임의 흙 고르기 품은 본 붙임 품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
- 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 화강석(포천석) 자재가격 조정

2. 용역 심사사례

- 2- 1.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 2- 2.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 2- 3.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 2- 4. 도로명주소 D/B 일제정비용역
- 2- 5.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 2- 6. 체험촌 건립사업 설계용역
- 2- 7.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2- 8.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2- 9.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용역
- 2-10. 폐기물 처리용역

2-1 통합 전면책임감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군
- 용역개요
 - 통합전면책임감리 1식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93km
- 발주유형 : 기술용역(감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039,290	1,542,580	496,710	24.36%

☐ 적용기준 및 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 주요 심사내용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거 총감리원수 조정
 - 대상공사비 및 예정공정표의 총공사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산출한 총감리인원을,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을 적용 대상공사비 와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총감리인원 재산정
- 용역원가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요율 조정
 - 손해배상 보험요율 : 1.392% → 1.438%

2-2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군
- 용역개요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L=11.5km
 - 생태하천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L=5.0km
 - 조사측량, 토질조사, 사전환경성검토 1식
- 발주유형 : 기술용역(설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283,300	1,110,000	173,300	13.50%

☐ 적용기준 및 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 주요 심사내용

- 하천정비기본계획 표준단위 업무 조정
 - 작업계획수립외 37개 항목 조사인력 조정(수자원개발 표준품셈)
-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 산정 기준대상공사비중 부가세 제외
- 사전환경성검토 비용 조정(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
 - 조사항목 및 소요인력에 대하여 개정된 표준품셈에 의거
재조정(표준품셈 제16호 2008.12.)
- 보고서 인쇄비 조달청 경인쇄 기준요금 적용
 - 수정이 불필요한 디스켓 제공에 따른 인쇄단가 조정(Δ 5,150원/p)

2-3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출연기관
- 용역개요
 - 건축개요 : 연면적 12,487㎡, 지하1층/지상4층
 -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발주유형 : 기술용역(설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66,119	490,751	75,368	13.3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주요 심사내용

- 불필요 공종 삭감 조정
 - 추정공사비 중 직접공사비가 아닌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부가세 등 제외 후 설계용역비 재산정
- 중복 과다 적용 조정
 - 기 완료된 계획(기본)설계와 중복된 부분 삭감 조정

2-4 도로명주소 D/B 일제정비 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군
- 용역개요
 - 도로명주소 D/B 일제정비 1식
 - 도로구간 2,053개, 도로명판 4,431개
 - 건물번호판 55,183개
- 발주유형 : 기술용역(수치지도제작/소프트웨어사업)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00,000	271,000	29,000	9.67%

☐ 적용기준 및 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 주요 심사내용

- 현지조사 내용입력 및 정위치 편집 대가 조정
 - 표준품셈에 의거 정위치편집 작업반의 인원 및 참여비율 조정
 - 특급기술자 0.206인 2%, 고급기술자 1.030인 10%를 적용
 - 특급기술자 1.339인 13%, 정보처리기사 0.515인 5%를 적용
 - 중급기능사 7.210인 70%를 적용 조정
- 보고서 인쇄비 조달청 경인쇄 기준요금 적용
 - 수정이 불필요한 디스켓 제공에 따른 인쇄단가 조정(△5,150원/p)

2-5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군
- 용역개요
 - 타당성 조사 1식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1식
 - 광역소각시설 증설 200톤/일
- 발주유형 : 기술용역(엔지니어링)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93,790	555,380	38,410	6.47%

☐ 적용기준 및 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 주요 심사내용

-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중복항목 조정
 -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중복분야는 타당성조사 기초자료의 충분한 활용이 가능하므로 조사인력 감 조정
 - 생활폐기물 특성조사 및 규모산정등 3개 분야
- 지질조사 단가산정 인력조정(건설표준품셈)
 - 보링(점토층,모래층,풍화암층,연암층) 투입 인력 조정
 - 표준관입시험 및 자연시료채취 단가 조정
- 품질시험비 및 검사수수료 조정(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 입도시험등 5개 시험에 대하여 품질시험비 및 검사수수료 조정

2-6 체험촌 건립사업 설계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군
- 용역개요
 - 사업면적 : 75,956㎡
 - 사업내용 : 건축물 체험관 외 20개시설
- 발주유형 : 기술용역(설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00,000	635,392	164,608	20.58%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주요 심사내용

- 이중 계상된 설계 용역비 조정
 - 기본설계가 이미 시행중임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산출하여 기본설계를 제외한 실시설계비만 계상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가 조정
 - 기본설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개요 소요 인력 산출 제외
 - 재해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소요인력 조정계수 조정
- 지반조사의 보고서 작성비 조정
 - 지반조사 표준 품에는 보고서 작성비가 포함되어 있어 삭제

2-7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도
- 사업개요
 - 낙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 사전환경성검토 1식
- 발주유형 : 학술용역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16,000	287,485	28,515	9.0%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 주요 심사내용

- 직접인건비 조정
 - 기본노임,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산출 오류 정정
 - 연구보조원 참여인원 조정
- 사전환경성검토 대가 조정
 - 제경비(120%-130%), 학술료(10%-30%)의 최저 요율 적용
 - 환경질 측정분석비(7개항목) 조정
 - 조판생략에 따른 인쇄비 감액

2-8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도
- 사업개요
 -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 기후변화 대응방안 연구 등 1식
- 발주유형 : 학술용역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00,000	182,167	17,833	8.9%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공무원 여비규정

☐ 주요 심사내용

- 직접인건비 조정
 - 과업내용서 등 과업범위를 고려 연구원 참여인원 조정
- 직접경비 조정
 - 참여 인원에 따른 국내여비 적정 수준 조정
 -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 회의비 적정 수준 조정
 - 교통통신비 등 조정

2-9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출연기관
- 사업개요
 - 발굴면적 : 254,500m²
 - 용역내용 : 지표 및 매장 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
- 발주유형 : 학술용역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18,747	282,604	36,143	11.34

☐ 적용기준 및 법규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주요 심사내용

- 현장인부 퇴직적립금 삭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적용 제외
- 제경비, 학술료 조정
 - 제경비 및 학술료를 대가기준에 의거 적정 요율로 조정

2-10 폐기물 처리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출연기관
- 용역개요
 -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폐콘크리트 24,444톤, 폐아스콘 10,867톤
 - 건설폐기물 11,205톤, 혼합폐기물 2,477톤
- 발주유형 : 일반용역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724,580	1,603,613	120,967	7.0%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0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 발생 폐기물 수량 조정
 - 건축폐기물 중 처리단가가 저렴한 콘크리트폐기물은 최대한 선별 처리토록 조정
 - 건설폐기물 발생량 : 20,181톤 → 11,205톤(減 8,974톤)
 - 폐콘크리트 발생량 : 15,468톤 → 24,444톤(增 8,974톤)
- 폐기물 상차비 조정
 - 견적단가를 품셈에 의거 원가계산 산출하여 적용

3. 물품 심사사례

- 3-1. 식재료 구입
- 3-2. 교통안전시설 물품 구입
- 3-3. 의약품 구입
- 3-4. 반도체 관련 장비 구입
- 3-5. 홍보책자 제작
- 3-6. 증언 청취록 제작

3-1 식재료 구입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출연기관
- 구매내역
 - 육류 등 급식재료 구입
- 발주유형 : 물품구매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008년	662,028	600,753	61,275	9.3%
2009년 1차	395,533	355,514	40,019	10.1%
2009년 2차	703,126	585,363	117,763	16.7%
2009년 3차	682,989	624,282	58,707	8.6%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주요 심사내용

- 구매단가 조정
 - 2인이상 도·소매업체 가격조사 최저가격 적용
 - 소비자 물가지수 적용 조정
- 착안사항
 - 견적은 2인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저가를 적용

3-2 교통안전시설 물품 구입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도 사업소
- 구매내역
 - 갈매기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구입
- 발주유형 : 물품구매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008년	49,500	28,875	20,625	41.67%
2009년	40,000	25,900	14,100	35.25%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주요 심사내용

- 구매단가 조정
 - 2인이상 업체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조사 최저가격 적용
 - 정부 고시가(보험수가) 초과여부 및 전년도 낙찰가를 검토하여 적정가격으로 조정
- 착안사항
 - 견적은 2인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저가를 적용
 - 정부고시 등 공시된 가격이 있는지 조사하여 적용

3-3 의약품 구입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출연기관
- 구매내역
 - 의약품 구입
- 발주유형 : 물품구매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009년 1차	2,257,467	2,019,359	238,108	10.5%
2009년 2차	4,258,582	3,923,144	335,438	7.9%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주요 심사내용

- 구매단가 조정
 - 2인이상 업체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조사 최저가격 적용
- 착안사항
 - 시중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 중 업자공표가격은 거래실례가격이 아니므로 적용 주의
 - 견적은 2인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저가를 적용

3-4 반도체 관련 장비 구입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출연기관
- 구매내역
 - 반도체 관련 실험·연구장비 등 구입
- 발주유형 : 물품구매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009년 1차	199,000	184,517	14,483	7.3%
2009년 2차	6,261,500	5,919,108	342,392	5.5%
2009년 3차	1,151,942	1,073,732	78,210	6.8%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주요 심사내용

- 구매단가 조정
 - 2인이상 도소매업체 가격조사 최저가격 적용
 - 수입원가계산에 따른 견적가 조정
- 착안사항
 - 견적은 2인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저가를 적용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가계산 금액과 비교 검토

3-5 홍보책자 제작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도
- 인쇄규격
 - 제작부수 : 2,000부(국문 1,000부, 영문 1,000부)
 - 제작규격 : 16절(200page)
 - 제작사양 : 옵셋인쇄, 4색도, 기획·도안·사진촬영·취재 등
- 발주유형 : 인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4,292	41,751	2,541	5.7%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인쇄비 기준요금

☐ 주요 심사내용

- 인쇄용지 및 인쇄비 조정
 - 인쇄용지 손지을 적용 오류 조정
 - 옵셋인쇄료 기준단가 적용 오류 조정
- 조판료 및 제본비 등 조정
 - 미계상된 국문판 조판료 추가 반영
 - 제본비 산출시 미적용된 가산비율 적용(아트지 등 30% 가산)
- 기획 및 취재편집비 등 조정
 - 과업내용서를 검토하여 기획 및 도안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 취재편집비 및 사진촬영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3-6 증언 청취록 제작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도
- 인쇄규격
 - 제작부수 : 600부(국문 300부, 영문 300부)
 - 제작규격 : 16절(국문 550page, 영문 50page)
 - 제작사양 : 옵셋인쇄, 표지4색도, 내용-1색도
- 발주유형 : 인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1,559	28,079	3,480	11.0%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인쇄비 기준요금

☐ 주요 심사내용

- 조판료 조정
 - 표지(칼라, 16절)에 대한 조판료 기준단가 적용 오류 조정
- 제본비 조정
 - 국문판(양장) 제본료 기준단가 적용 오류 조정
 - 영문판(무사무선철) 제본료 기준단가 적용 오류 조정

IV

부 록

1.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2.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3. 조달청 인쇄비 기준요금
4. 분야별 원가산출 예시
5. 관련부서 협조사항
6. 계약심사 관련 질의응답

1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정) 2008-08-29 규칙 제 2614호
(일부개정) 2009-07-10 규칙 제 26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0>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도본청의 과·담당관
 -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다. 도의회사무처
 - 라. 지방공기업
 - 마. 출연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 바. 시·군(구청포함)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군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신설 2009. 7. 10>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9. 7. 1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바. 「문화재보호법」 제1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 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계약 또는 원가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사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충청북도 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가심사는 최저가 입찰 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

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0 규칙 제2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상 호 : ·책임기술자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담 당 부 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 [원가계산서, 도면, 지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등] 2. 1항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서식2>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illegible]

<별지 서식3>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계약대상 업체 (수의계약의 경우)	· 상호 : · 주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타사항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1,2,3항의 전산화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서식4>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제조원가계산서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일위대가표 포함) 1부. 3. 제조(수리)규격 및 시방서 1부. 4. 1,2,3항의 전산화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서식5>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2,3항의 전산화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서식6>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2,3항의 전산화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서식7>

공사 저가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 청 기 관	
공 사 위 치			
공 사 기 간			
공사추정금액			
공 사 개 요			
설 계 자	상 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
발 주 자	담당부서 : 담 당 자 :	(전화 :	)
공사현황			
◦ 첨부 서류: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및 입찰자별 가격 투찰 현황 - 기타저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설계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행정안전부예규 제 257 호]
(2009. 8. 6)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

1-1-1 목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작성, 공사손해보험 가입, 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작성방법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2절 추정가격

1-2-1 추정가격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1-2-2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 (1)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 (2)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 (1)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2)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금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3절 예정가격

1-3-1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1-3-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1. 예정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희망수량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의 결정은 당해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4.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구매·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구매·제조,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3-3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1. 작성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 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한 가격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1-3-4 예정가격의 결정시 세액합산 등

1.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할 원재료의 매입세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1-3-5 예정가격산정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6 예정가격의 비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개산계약·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7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1.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 :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임차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제외
- (3)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경우

2.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국제입찰의 경우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3-8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장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제1절 기초금액 작성

2-1-1 기초금액의 확정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2-1-2 기초금액의 확정

1. 재료비·노무비·경비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등을 합산한다.
2. 기초금액이 가감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1-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집행 5일전까지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2-2-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내에서 7개, $0\% \sim -3\%$ 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2-2-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1.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2.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2-2-3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제3장 감정가격·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제1절 감정가격

3-1-1 감정가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3-1-2 예정가격의 결정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 1백만원이하 이거나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견적가격

3-2-1 견적가격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3-2-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거래실례가격

3-3-1 거래실례가격의 개념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바 그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자는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3-3-2 거래실례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지)
2.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지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3-3-3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한다

<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하여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단가산출표, 일위대가표 등의 물품 산출기초가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사급자재 등에 대한 물품은 원가계산요소가 되므로 직접재료비로 분류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산정요율에 반영 가산되어야 한다.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총칙

4-1-1 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4-1-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4-1-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1.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 노무비=노무량×노무비 단가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2.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7-2-1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4-1-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이 예규에 의거, 원가계산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2절 제조원가계산

4-2-1 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2-2 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2-3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1.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 부품·외장재료 및 4-2-5의 (13)목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2.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3.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4. 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4-2-4 노무비

1. 노무비의 구성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

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3. 간접노무비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 각목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4. 제2호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 단가}$$

5. 제3호의 간접노무비는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6. 제5호의 간접노무비는 제4호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직접인건비보다 간접노무비가 초과하는 경우 증빙자료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4-2-5 경비

1. 경비의 개념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의 산출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중 정액법에 따라 기준내용 연수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 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 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 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4-2-6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여, 사무실직원의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산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4-2-7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4-2-6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2-8 이윤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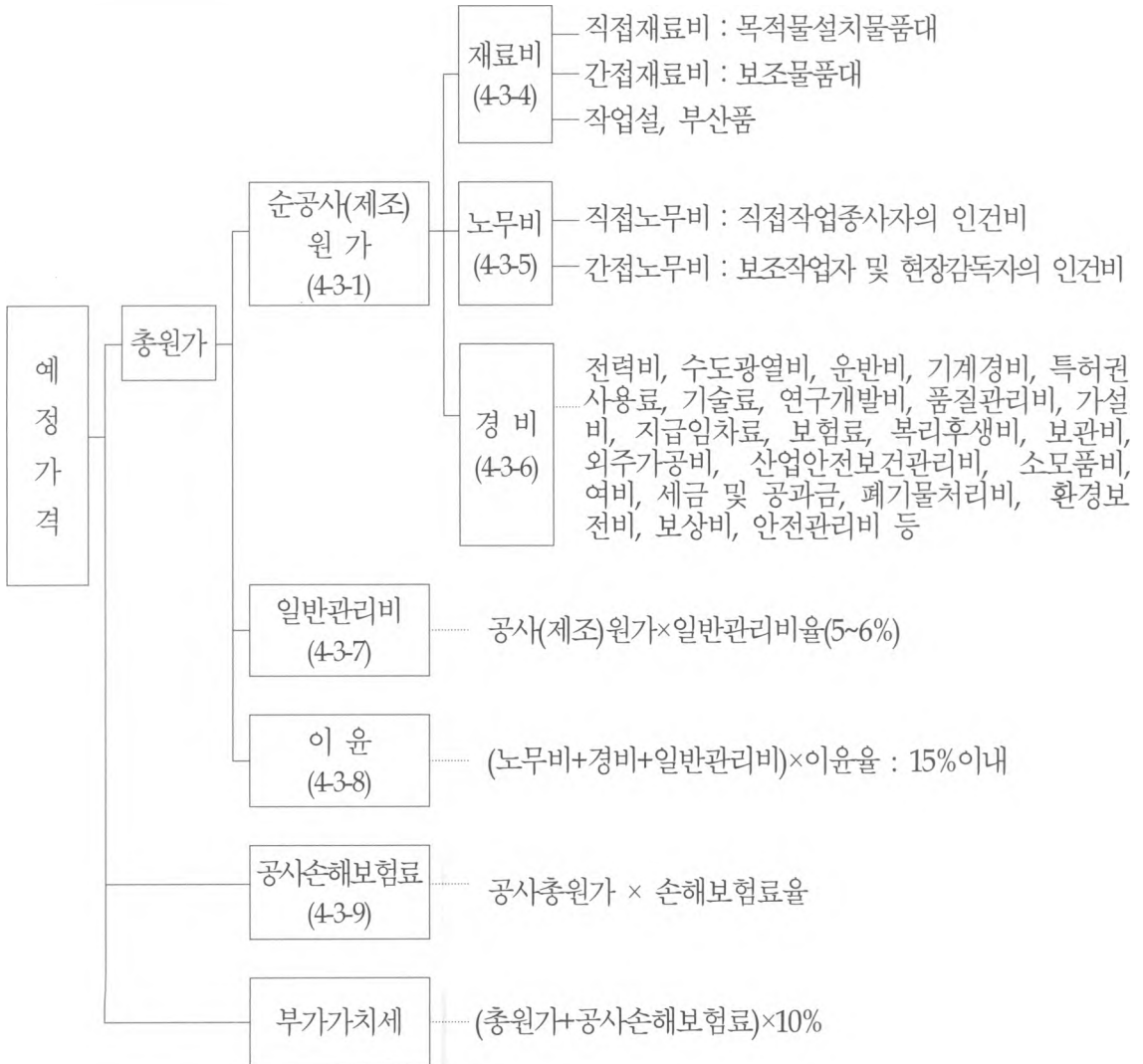
4-3-1 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3-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
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3-3 공사의 원가체계



4-3-4 재료비

1. 재료비의 구성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2.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 부품, 외장재료 및 4-3-6 제3호 (13)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3. 간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4.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5.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4-3-5 노무비

1. 노무비의 내용은 4-1-3과 4-2-4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공사에 있어서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 (가)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계상방법

-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 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14.5	
	토 목 공 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 사 규 모 별	5억원 미만	14	
	5~30억원 미만	15	
	30억원 이상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 17%+14.5%) / 3 = 15.5%

4-3-6 경비

1.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의 산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 및 동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 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

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8) 가설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4-3-9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4-2-4 제2호 (4)목 및 4-3-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4-3-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4-2-6과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4-3-8 이윤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공비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3-9 공사손해보험료

1.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 공 식 >

$$\text{공사손해보험료} = \text{공사총원가} \times \text{손해보험료율}$$

2.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4-3-10 공사손해보험 가입

1. 근거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 보험의 가입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의 범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가입금액

- (1)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2) (1)목에 규정한 순계약금액에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4)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6.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2)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 (1)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1)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 (4)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10.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

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 (1)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4-4-1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4-2 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4-4-1의 제1호 (2)목 및 (3)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4-4-3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4-4 인건비

1. 인건비의 개념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인건비의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4-4-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

(1) 여비의 계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계상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 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4-2-5 제3호 (3)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4-4-6 일반관리비등

1. 일반관리비의 계상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이윤

(1)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4-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1.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4-4-4의 상여금, 퇴직금 및 4-4-6 제1호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4-5-1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1.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2.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호 및 4-4-1 내지 4-4-6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과학기술부 공고)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조달청)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환경부 고시)
- 공무원여비 규정(대통령령 제18673호)
- 시중노임단가 기준
 - 공사부분노임단가 기준(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노임단가 기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0)목
 -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3)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 고용보험료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0)목
 -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8)목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
- 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 계약의 이행보증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0)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0)목
-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환정보전비

-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및 별표 15(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1)목

● 품질관리비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7)목
-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2-5 제3호 (3)목
-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4)목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5, 동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4)목

● 공사손해보험료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9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실적공사비

5-1-1 실적공사비의 개념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

5-1-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1-3 실적공사비의 자료관리

1.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서 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및 표준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실적공사비의 의한 예정가격산정

5-2-1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2-2 예정가격의 작성

1.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7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의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5-2-3 직접공사비

1.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 식 >

$$\text{직접공사비} = \text{공종별 수량} \times \text{단가}$$

2.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4-3-6를 준용한다.

3. 제1호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은 별도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4. 직접공사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정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5-2-4 간접공사비

1.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에 조정계수와 비목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 식 >

$$\text{간접공사비} = \text{직접공사비}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ext{비목별 요율}$$

- (1) 조정계수 : 공사규모(금액), 공사기간에 따라 조정계수 설정
- (2) 비목별 요율 : 법정요율로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요율과 동일

2.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4-2-4의 제3호 및 4-3-6을 준용한다.

- (1) 간접노무비
- (2) 산재보험료
- (3) 고용보험료
-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5) 안전관리비
- (6) 환경보전비
- (7) 국민건강보험료
- (8) 국민연금보험료
-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 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10) 기타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3. 제1호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4. 5-2-3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5-2-5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4-2-6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5-2-6 이윤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5-2-7 공사손해보험료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5-2-8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6-1-1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1.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3. 용역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
 -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8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6-1-2 원가계산용역의뢰시 주의사항

1. 계약담당자는 6-1-1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6-1-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경우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당해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5.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원가계산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에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절 원가검토기관

6-2-1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3.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
 -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3인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8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인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자유치사업 등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
-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서 및 예정가격에 대하여 가격산정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2-2 원가검토위탁시 주의사항

1.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6-2-1의 전문기관 중에서 당해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검토서에 당해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6.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 의뢰시 원가검토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에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1절 특례사항

7-1-1 특례설정등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7-2-1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원가,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조·공사원가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위 제1호를 준용한다.

7-2-2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7-2-3 세부시행기준

1.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 별표 1 >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 간 작 업 설 .부 산 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 간 작 업 설 .부 산 물 등(△)				
		소 계				
	경 비	전 수 운 감 수 특 기 연 시 지 보 복 보 외 산 소 여 세 폐 도 지 기	력 도 반 가 리 허 술 구 현 급 험 리 관 주 업 모 비 · 교 과 물 인 수 법	비 광 비 상 수 권 료 개 검 임 료 후 비 가 안 품 · 공 공 처 인 수 정	열 비 각 선 사 발 사 차 생 공 전 비 · 통 과 치 쇄 료 경	비 비 비 용 료 비 비 료 비

< 별표 2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재료비	직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순 공 사 원 가	경비	전수운기특기연품가지보복보외산소여세폐도지환보안건기 비광열비 비경계권사용료 연구개발비 질관리비 설비차료 급임료생비 보관비가공비 업가안전보건관리비 모품비 교통비.통신비 과공과비 기물처리비 서인쇄비 급수료전비 경보관리비 상전관로자퇴직공제부금비 안설근로정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별표 3 >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 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 4>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역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원 가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531,531 원
연구원	월 1,941,142 원
연구보조원	월 1,297,590 원
보조원	월 973,226 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별표 6>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까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상의 용역의 내용 및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도 경리관귀하

<별표 7>

실적공사비 총괄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공종수량×실적단가
간 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규모·기간·종류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산재보험료			[직접공사비] ×계수×율
	고용보험료 (등급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종류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안전관리비 (규모·종류별)			[직접공사비+관급자재] ×계수×율
	기타법정경비 (규모·기간·종류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환경보전비 (공사종류별)			[직접공사비] ×율
일 반 관 리 비				[직접+간접] ×율
이 윤				[직접+간접+일반] ×율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 직접공사비 : 실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간접공사비 : 실적공사비를 일부 공종에 적용하는 경우도 실적공사비 방식에 의해 산정

< 별표 8 >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이공계기술자격기준	상경제열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 년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2 년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 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 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 육이수후 5년이상, 기타 10 년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이상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문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인쇄비 기준요금

3-1 일반인쇄 기준요금

(1) 전자조판 및 편집료

(단위 : 면/원)

구 분	판 형	기 준 단 가
일반책자	4 × 6 배 판 (16절)	10,050
	4 × 6 판 (32절)	6,200
	국 배 판 (10절)	14,630
	국 판 (25절)	7,280
	크 라 운 판 (18절)	8,580
화 보	4 × 6 배 판 (16절)	25,400
	4 × 6 판 (32절)	14,390
	국 배 판 (10절)	35,700
	국 판 (25절)	20,500
	크 라 운 판 (18절)	22,300

- 주 : 1) 본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색분해(스캔비)를 포함한 요금입니다.
 2)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3) 단서는 1단 증가시마다 가로쓰기 요금의 5%를 가산한다.
 4) 조판완료 후 원고변경 시 전면 변경은 100%, 부분변경은 그 변경비율에 따라 가산한다.
 5) 슬라이드 대여료, 컬러프린터 및 인쇄교정을 필요로 할 때는 시중가격을 준용한다.
 6) 표지, 커버, 포스터, 상업 인쇄물의 디자인과 컷, 삽화 등은 시중가격을 준용 한다.
 7) 2색 또는 3색 기준으로 전자조판 및 색 교정할 경우에는 일반책자 기준요금의 40%, 50%를 각각 가산한다.
 8) 화보는 3색 이상 칼라인쇄를 적용한다.
 9) 외국문자 중 벽자나 약자의 혼합판은 내용에 따라 시중가격을 적용한다.
 10) 일반책자 9포인트 이하일 경우 10%를 가산한다.
 11) 조판 및 편집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감액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1) 조판 및 편집료 할증 조건표

(단위 : 원)

판	형	기본 요금	외국문자 혼합(영문제외)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				
			5-10% 혼합 10%할증	10-20% 혼합 20%할증	30-50% 혼합 30%할증	60-80% 혼합 40%할증	90-100% 혼합 60%할증	10-20% 혼합 30%할증	30-50% 혼합 50%할증	60-80% 혼합 70%할증	90-100% 혼합 90%할증	
4 × 6 배판		10,050	11,050	12,060	13,060	14,070	16,080	13,060	15,070	17,080	19,090	
4 × 6 판		6,200	6,820	7,440	8,060	8,680	9,920	8,060	9,300	10,540	11,780	
국 배 판		14,630	16,090	17,550	19,010	20,480	23,400	19,010	21,940	24,870	27,790	
국 판		7,280	8,010	8,730	9,460	10,190	11,640	9,460	10,920	12,370	13,830	
크라운판		8,580	9,430	10,290	11,150	12,010	13,720	11,150	12,870	14,580	16,300	

(2) 필름출력비

(단위 : 원)

구 분	기 준 단 가			
	1도	2도	3도	4도
전지	30,050	60,100	90,150	120,200
2절	16,070	32,140	48,210	64,280
4절	8,040	16,080	24,120	32,160
6절	6,020	12,040	18,060	24,080
8절	4,010	8,020	12,030	16,040
10절	2,500	5,000	7,500	10,000
16절	2,010	4,020	6,030	8,040
18절	1,700	3,400	5,100	6,800
25절	1,310	2,620	3,930	5,240
32절	1,000	2,000	3,000	4,000

(3) 인쇄판대

(4×6판 기준)

(단위 : 원)

구 분	2 절	전 지	국판전지
P.S판	12,140	20,890	4×6판 전지의 69.4%

주 : 1) 4절은 2절 요금의 50%를 계상하고, 4절 미만은 4절로 본다.

2) 인쇄판(P.S판)의 내쇄력 : 70,000통

(4) 옅색인쇄료

(2절 단면 기준)

(단위 : 원)

통 수	기 준 단 가 (통 당)			
	1 색 도	2 색 도	3 색 도	4 색 도
1,000통 까지	13.28	23.72	34.37	43.46
2,000통 까지	12.03	21.42	30.77	39.05
3,000통 까지	10.71	18.85	26.97	33.85
5,000통 까지	9.30	16.21	22.90	28.74
7,000통 까지	8.67	14.99	20.91	26.29
10,000통 까지	7.84	13.48	18.54	23.37
13,000통 까지	6.52	11.11	14.94	18.89
13,000통 초과	5.17	8.55	11.06	14.29

주 : 1) 150g / m² 이상의 후지 또는 50g / m² 이하의 박엽지로 인쇄할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2) 원색인쇄는 20%를 가산한다.

3) 금분, 은분, 펄(빠루), 특수별색인쇄는 100%를 가산한다.

4) 전면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5) 국관계열로 인쇄할 경우 국배판은 20%, 국판은 33%를 감산한다.

6) 1,000통 미만은 1,000통으로 계산한다.

7) 4×6전지 단일 인쇄물로 4도 인쇄시 70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기본인쇄 요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산한다.

가) 4×6전지 70연 이상 100연 미만 : 3%

나) 4×6전지 100연 이상 150연 미만 : 5%

다) 4×6전지 150연 이상 200연 미만 : 6%

라) 4×6전지 200연 이상 : 7%

8) 3절인쇄는 2절인쇄의 67% 요금을 계산한다.

9) 전지는 2절인쇄의 100% 가산, 4절은 50% 감산한다.

(5) 책자 제본료

(면당)

(단위 : 원)

판	형	무사무선철	반 양 장	양 장
4 × 6 배 판	(16절)	0.974	1.134	1.617
4 × 6 판	(32절)	0.771	0.915	1.347
국 배 판	(10절)	1.683	1.980	2.886
국 판	(25절)	0.798	0.968	1.382
크 라 운 판	(18절)	0.869	1.049	1.491

주 : 1) 4×6판 미만은 4×6판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아트지, 인디아지, 박엽지, 100g/m²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3) 1,000부 미만은 1,000부로 계산한다.

4) 최저기준면수

◦ 무사무선철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반 양 장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양 장 : 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5) 간지(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간지란 표지와 본문의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을 말하며, 간지와 본문의 지질이 동일하거나 8페이지, 16페이지등 해당 물량은 간지로 보지 않는다.)

(6)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 조판료

(면당)

(단위 : 원)

절	수	기 준 단 가
2	절	57,330
3	절	46,130
4	절	36,570
5	절	26,040
6	절	21,720
8	절	19,070
9	절	15,100
10	절	13,900
16	절	9,980
25	절	6,000
32	절	4,400

- 주 : 1) 표시하지 않은 절수의 조판료는 가까운 절수의 요금으로 계산한다.
- 2) 외국문자(영문제외)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등의 조판료 할증은 전자조판료 할증 조건표의 혼합비 할증율을 준용하며,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 3) 활판조판일 경우 20,000통 인쇄를 기준으로 1판씩 추가 계산한다.

(7)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 옵셋인쇄료

(4절 단면기준)

(단위 : 원)

통 수	기 준 단 가 (통 당)	
	1 색 도	2 색 도
1,000통 까지	11.36	20.40
2,000통 까지	10.19	18.14
3,000통 까지	9.25	16.05
5,000통 까지	7.83	13.68
7,000통 까지	7.42	12.62
10,000통 까지	6.78	11.42
13,000통 까지	5.52	9.27
13,000통 초과	4.38	7.14

- 주 : 1) 150g/m² 이상의 후지 또는 50g/m² 이하의 박엽지로 인쇄할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 2) 금분, 은분, 펄(빠루), 특수별색인쇄는 100%를 가산한다.
- 3) 전면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 4) 연번호인쇄는 별도1색도로 보며, 20%를 가산한다.
- 5) 미싱으로 절취선을 넣을 때에는 30%를 가산한다.
- 6) 1,000통 미만은 1,000통으로 계산한다.
- 7) 활판으로 인쇄시는 1색도 요금의 25%를 가산한다.

(8)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 제본료

(무사무선철, 100매 1권 기준)

(단위 : 원)

판	형	기 준 단 가
4	절	116.69
8	절	86.79
16	절	62.41
32	절	34.57
50	절	23.27

- 주 : 1) 표시하지 않은 절수의 요금은 큰절수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아트지, 박엽지, 100g/㎡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3) 복사용 인쇄물의 경우에 2매 1조는 300%, 3매 1조는 400%, 4매 1조는 500%를 가산한다.
4) 권당 50매 미만일 경우에는 30%를 감산한다.
5) 띠돌림 제본 시에는 무사무선철 요금으로 계산한다.

(9)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조판료

(단위 : 원)

규 격	기 준 단 가
15"×11" (38.1cm×27.9cm)	16,110

- 주 :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기준규격(15"×11")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10)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제판료

(1색도 기준)

(단위 : 원)

규 격	기 준 단 가
15"×11" (38.1cm×27.9cm)	9,940

- 주 :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기준규격(15"×11")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11)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판대

(단위 : 원)

규격	기준단가
15"×11" (38.1cm×27.9cm)	2,900

주 :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기준규격(15"×11")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12)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료

(15"×11"기준)

(단위 : 원)

통수	기준단가 (통당)			
	1 색 도	2 색 도	3 색 도	4 색 도
10,000통 까지	2.65	4.68	6.76	8.61
20,000통 까지	2.37	4.14	5.99	7.45
40,000통 까지	1.97	3.48	4.99	6.12
60,000통 까지	1.69	2.94	4.17	5.24
100,000통 까지	1.47	2.51	3.57	4.36
100,000통 초과	1.28	2.23	3.11	3.81

주 : 1) 미싱, 천공, 접지는 1색도 요금의 30%를 각각 별도 계상한다.

2)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3) 라인프린터폼 인쇄 및 순백지 인쇄는 본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계산한다.

5) 10,000통 미만은 10,000통으로 계산한다.

(13) 옵셋윤전인쇄료

(2절 단면 기준)

(단위 : 원)

통수	기준단가 (통당)			
	1 색 도	2 색 도	3 색 도	4 색 도
50,000통 까지	3.58	6.52	9.32	11.83
70,000통 까지	3.41	5.99	8.63	10.89
100,000통 까지	3.14	5.50	7.71	9.75
150,000통 까지	2.69	4.71	6.63	8.34
200,000통 까지	2.62	4.45	6.19	7.80
200,000통 초과	2.57	4.08	5.85	7.28

- 주 : 1) 국판계열로 인쇄할 경우 국배판은 20%, 국판은 33%를 각각 감산한다.
 2)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3) 50,000통 이상 인쇄물이라도 매엽기인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요금을 따르지 않는다.
 4) 1색도 인쇄의 경우 불가피하게 2색 윤전기 이상의 시설로 인쇄하는 경우 1색도 요금에 30%를 가산한다.

(14) 자동책자 제본료

(면 당)

(단위 : 원)

판	형	무사무선철	반 양 장	양 장
4 × 6 배 판(16절)		0.591	0.720	1.004
4 × 6 판 (32절)		0.485	0.564	0.838
국 배 판 (10절)		1.047	1.215	1.739
국 판 (25절)		0.511	0.606	0.872
크 라 운 판(18절)		0.550	0.665	0.918

- 주 : 1) 4×6판 미만은 4×6판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아트지, 인디아지, 박엽지 또는 120g/㎡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3) 최저기준면수
 ◦ 무사무선철: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반 양 장: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양 장: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4) 간지(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 (간지란 표지와 본문의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을 말하며, 간지와 본문의 지질이 동일하거나 8페이지, 16페이지 등 해당 물량은 간지로 보지 않는다.)

(15) 인쇄용지손지율

① 옵셋(매엽기)인쇄 손지율

(단위 : %)

구 분	1색 (1도단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1,000통 까지	9.0	12.0	14.0	17.0	18.0	23.0	23.0	29.0
2,000통 까지	8.2	11.1	13.0	16.0	16.5	21.5	21.0	27.0
3,000통 까지	7.0	9.3	11.0	14.0	14.0	18.5	17.5	23.0
5,000통 까지	5.5	7.3	8.4	10.8	11.0	14.5	13.5	18.0
10,000통 까지	3.7	5.0	5.7	7.2	7.5	9.9	9.3	12.4
13,000통 까지	3.4	4.6	5.2	6.6	6.9	9.0	8.6	11.3
13,000통 초과	2.5	3.3	3.8	4.8	5.0	6.5	6.3	8.2

② 옵셋윤전인쇄 손지율

(단위 : %)

구 분	1색 (1도단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50,000통 까지	6.5	7.8	7.8	9.4	9.1	11.0	10.0	12.0
70,000통 까지	5.9	7.1	7.1	8.5	8.3	10.0	9.2	11.0
100,000통 까지	4.9	5.9	5.9	7.1	6.9	8.3	7.8	9.3
150,000통 까지	4.1	5.0	5.0	6.0	5.8	7.0	6.6	7.9
200,000통 까지	3.6	4.4	4.4	5.3	5.1	6.2	5.8	7.0
200,000통 초과	3.5	4.2	4.2	5.1	4.9	5.9	5.6	6.7

③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 손지율

(단위 : %)

구 분	1색 (1도단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10,000통 까지	12.9	14.1	13.8	15.2	14.7	16.1	15.6	17.1
20,000통 까지	10.7	11.7	11.3	12.5	12.0	13.2	12.7	13.9
40,000통 까지	7.3	8.0	7.7	8.4	8.1	8.8	8.3	9.1
60,000통 까지	5.8	6.2	6.0	6.5	6.3	6.8	6.4	6.9
100,000통 까지	5.1	5.5	5.2	5.7	5.4	5.9	5.6	6.1
100,000통 초과	4.9	5.3	5.0	5.5	5.1	5.6	5.3	5.8

3-2 경인쇄 기준요금

< 전자조판 기준 >

주간작업 10포인트

(단위 : 인쇄면당 원)

절 수	지 질	50부까지	10부마다
8 절	신 문 용 지	15,080	132
	중 질 지	15,270	157
	백 상 지	15,370	183
10 절	신 문 용 지	11,960	122
	중 질 지	12,040	140
	백 상 지	12,150	157
16 절	신 문 용 지	8,070	81
	중 질 지	8,120	91
	백 상 지	8,180	101
25 절	신 문 용 지	5,510	72
	중 질 지	5,540	74
	백 상 지	5,580	80
32 절	신 문 용 지	4,150	47
	중 질 지	4,160	50
	백 상 지	4,190	55

주 : 1) 위의 단가는 일반적인 사양에 대한 것이므로 활자호수의 크기, 조판 과정, 용지의 절수와 평량 등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거나 기타 다른 특성이 있는 인쇄물은 경인쇄요금 계산체증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307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 경인쇄 할증요금 >

<기본사항>

1. 원판의 수량은 당해 절수의 인쇄면수로 한다.
2. 최저기준 부수를 50부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수에 대하여는 매 10부마다의 가격을 50부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3.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9포인트 및 8포인트로 구분하고 10포인트보다 큰 활자는 10포인트로 한다.
4. 활자의 크기가 9포인트 또는 8포인트인 경우에는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아래 금액을 가산한다. (단위: 원)

구 분	9포인트	8포인트	구 분	9포인트	8포인트
8 절	1,200	2,600	25 절	370	820
10 절	950	2,050	32 절	330	740
16 절	650	1,400			

5. 행간간격이 10.5포인트 2분 이상일 때에는 일반인쇄기준요금 전자조판료의 해당요금을 준용한다.
6.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41%, 10부마다의 요금에 31%까지 가산할 수 있다.

<본문용지>

1. 본문용지의 지질은 신문용지 54g/m², 중질지 70g/m², 백상지 80g/m²을 기준으로 하고, 평량이 실제 인쇄하는 지질과 15g/m² 이상 차이가 나거나 15g/m² 미만의 차이가 나더라도 총 인쇄량이 5연 이상인 경우에는 용지대를 가감한다.(용지대 가감액 산정방법:용지 총소요량(연)×지질별 시중 용지가격의 차액)

2. 본문용지의 크기는 8절, 10절, 16절, 25절, 32절로 구분하고, 그 중간크기의 요금은 큰 절수 가격에 의하되 용지대를 차감한다.
3. 단면인쇄물의 용지 소요량이 0.5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요량에 용지대 시중 거래가격을 곱하여 가산한다.
4. 경인쇄기로 인쇄할 수 없는 크기의 인쇄물이나 2색도 이상의 옴셋인쇄물이 합본되는 경우에 그 부분은 따로 분리하여 일반인쇄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5. 본문에 특수한 도안 또는 편집을 해야 하는 경우의 해당 인쇄면에 대하여는 당해 절수 백상지 1.5매 가격을 50부까지의 요금에 가산한다.
6. 외국문자(영문제외)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등이 30%정도 섞인 혼합판은 해당 포인트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30%를 가산한다.
7. 인쇄면중 제목이나 두문 또는 패선만으로 구성되거나, 면당 타자량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10포 요금에서 30%를 감산한다.
8. 조판(원판출력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되는 때는 아래 금액을 감액한다. (단위 : 원)

구 분	조판생략 감액 ⁽¹⁾	조판생략 감액 ⁽²⁾	조판생략 감액 ⁽³⁾
8 절	8,560	6,690	4,420
10 절	6,780	5,150	3,500
16 절	4,620	3,470	2,380
25 절	2,950	2,320	1,530
32 절	2,390	1,500	1,240

주: (1) 조판생략 감액: 제판용 인화지(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2) 조판생략 감액: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3) 조판생략 감액: 글자의 크기나 행간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 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9. 조판완료 후 원고변경 시에는 조판생략 감액(2)의 금액을 원고변경 비율과 곱하여 가산한다.

<표지가격>

1. 표지는 백상지 80g/m²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색인쇄의 경우에는 다음 가격에 의한다.
 - 가. 8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 나. 10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 다. 16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 라. 25절 책자 : 10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 마. 32절 책자 : 16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2. 기본 1도 이외의 추가 색도에 대하여는 1색도당 2.5매를 기본 50부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3. 아트지, 레자크지등을 사용할 때는 추가 1색도로 보며, 코팅을 할 때에는 추가 2색도로 본다.
4. 중간크기 책자의 표지가격은 큰 절수의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5. 양장, 반양장등 특수표지로 제본할 때에는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4

분야별 원가산출 예시

4-1 공사 원가 계산서

※ 제비를 적용기준

원가 요소	원가비목	적용방법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적용기준
재료비	직접재료비		당해공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 또는 부분품가치	
	간접재료비		당해공사의 실체 형성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 또는 부분품가치	
	부산물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작업설 등으로 매각가치가 있는 것으로 재료비에서 차감할 금액	
노무비	직접노무비		현장 직접 작업자의 노임	
	간접노무비	(직노)×율	현장 관리, 감독, 보조자의 노임	
경비	산출경비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산재보험료	(노)×율		
	고용보험료	(노)×율		
	건강,연금보험료	(직노)×율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퇴직공제부금비	(직노)×율	추정금액 5억원이상 건설공사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수수료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재+직노+관급)×율	<재료비(관급포함)+직노>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기타경비	(재+노)×율	<재료비+직노+산출경비>의 합계액	
	환경보전비	(재+직노+산출경비) ×율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순공사원가		(재+노+경)×율	위까지의 합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노+경+일)×율	추정가격 기준	
이윤			추정가격 기준	
공사손해보험료				
총공사원가			위까지의 합계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공사손해보험료>	

4-2 학 술 용 역 원 가 계 산 서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련근거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지위, 감독, 결론도출자(대학 부교수 수준)	-인원×기준단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총당금 반영가능) -기준단가: 별첨참조	
	연 구 원	책임연구보조자(대학 조교교 수준)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수행자(조교 수준)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수행자		
	소 계			
경 비	여 비	국내·외 여비(공무원여비규정, 관계 공무원 여비 제외)	인원×단가	
	유 인 물 비	각종 보고서 작성비(지대 포함)	수량×단가	
	전산처리비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 사용료 및 부대비용	수량×단가	
	시약및연구용 재 료 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수량×단가	
	회 의 비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 경비(수장 등)	인원×단가	
	임 차 료	특수실험실습기구, 회의장임차료 등	수량×단가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산전화료, 우편료	인원×단가	
	감가상각비	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조사비용	현황조사 비용(인거비, 경비 등)		
	소 계			
순 원 가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5%이내	
일반관리비합산원가				
이 윤			10%이내	
이윤합산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는 제외		
총 용 역 비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함

4-3 청소 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련근거
재료비	각종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에 한함	수량×단가	
	소계			
노무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직접종사자의 노동력 대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 생휴수당의 경우는 주40 시간 적용대상업체는 지급 제외(무급휴가로 변경)	-기본급: 노무량×노임단가 (한국위생관리협회 기준단가표 준용)	근로기준법 제53조, 56조, 60조, 70조 등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생휴수당			
	특별작업수당			
	상여금(연400%이내)			
	퇴직충당금			
	소계			
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 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시행 령 13조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75조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 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시행령 12조
	임금채권보장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료 납부액	-직접계산 및 기준요율 적용 : 산출예시 참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복리후생비	피복비	제복, 작업복 등 구입비	
		안전화	안전화 구입비	
		식비지원금	중식비 지원	
		교통통신비	교통비, 통신비	
	체력단련비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 해 필요한 항목에 한함	
	사업소세			지방세법 제248조
	장애인고용부담금	300인이상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제27조
	교육비	직원 법정교육비		
	감가상각비	장비의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소계			
	순 원 가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5%이내	
	일반관리비합산원가			
	이 윤		10%이내	
	이윤합산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는 제외		
	총 용 역 비			

※ 건축물 위생관리(청소)비 계산기준(한국위생관리협회) 선별적 준용

4-4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련근거
재료비	각종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에 한함	수량×단가	
	소계			
노무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기본급: 노무량×노임단가 (한국위생관리협회 기준단가표 준용)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년, 월차수당	직접종사자의 노동력 대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총당금 포함)	-제수당: 통상임금÷실근로시간 (209시간)×근로시간 ×요율	근로기준법 제53조, 56조, 60조, 70조 등
	법정선임수당			
	기술, 위험수당			
경비	상여금(연400%이내)			
	퇴직충당금			
	소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시행령 13조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75조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시행령 12조
	임금채권보장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료 납부액	-직접계산 및 기준율을 적용 : 산출예시 참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복리후생비	재복, 작업복 등 구입비		
	안전화	안전화 구입비		
	식비지원금	중식비 지원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 해 필요한 항목에 한함	
	교통통신비	교통비, 통신비		
	체력단련비			
	사업소세			지방세법 제248조
	장애인고용부담금	300인이상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27조
	교육비	직원 법정교육비		
	감가상각비	장비의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소계			
순 원 가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5%이내	
일반관리비합산원가				
이 윤			10%이내	
이윤합산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는 제외		
총 용 역 비				

※ 건축물 시설관리비 계산기준(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선별적 준용

4-5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원가계산서

□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산정방법

비 목	내 용	산출기준
개발원가	○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 개발원가 : 기능점수×점수당단가(별표10)×보정계수(별표11~14) - 기능점수 : 데이터기능점수+트랜잭션기능점수 - 데이터기능점수 = $\sum(\text{내부논리파일별 가중치})$ + $\sum(\text{외부연계파일별 가중치})$ - 트랜잭션기능점수 = $\sum(\text{외부입력별 가중치})$ + $\sum(\text{외부출력별 가중치})$ + $\sum(\text{외부조회별 가중치})$ - 보정계수 :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언어 보정계수 ※ 가중치 : 별표4~8의 기준에 의거 적용	○ 일반사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함 ○ 본 예시는 S/W 사업 분류 중“S/W개발비”를 기준함 ○ 기타사업은 특성에 따른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S/W 개발비 - 정보전략계획수립비 - S/W 재개발비 - 데이터베이스구축비 -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 S/W 유지보수비 ○ 사업별 공정별 세부산출방법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 별표1 ~ 별표23에 규정된 기준에 의함
직접경비	1. 당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2. 당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 관련 전문가 비용 5. 당해 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시험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이윤	(개발원가)×25%이내	
계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02호(2009.5.20)에 의한 원가계산

4-6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원가계산서

□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

비 목	내 용	산출기준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 투입인력수×개발기간×인건비 단가 ※ 공표임금단가에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 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함	○ 일반사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함 단, 인건비 단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
직접경비	○ 다음의 필요경비를 직접산출 1. 당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2. 당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 관련 전문가 비용 5. 당해 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사용료)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시형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 실지조사 계상
제경비	○ 직접인건비×제경비율 ○ 제경비율 : 110% ~ 120%	○ S/W사업대가기준 - 사업분류에 따라 제비율 적용 기준이 다름
기술료	○ 개발, 보유기술사용 및 기술축적대가,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요율 ○ 기술요율 : 20~40%	
계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02호(2009.5.20)에 의한 원가계산

4-7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인쇄물내역

1. 수 량 : 부

2. 규 격 : 16절지, 국배판(10절)

3. 용 지 : 표지

매, 본문 매

4. 면 수 : 표지

면, 본문 면

5. 인쇄색도 : 표지

도, 본문 도

6. 특수사양 :

7. 기 타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① 표지 : “(수량×인쇄매수(인쇄면수/2)÷(500×절수))×용지1연당단가 ×순지율(×국전지의 경우 0.694) ② 내지 : 표지와 동일 ③ 순원지대 : (표지+내지) - 작업설	
조 판 비		① 전자조판 및 편집료 면당단가×②면수(×③할증료) ※ 원고내용을 File으로 제공할 경우 면수 일정비율 감산가능	
사진제판		① 표지 : 인쇄기(판)크기기준 해당 색도별 해당절수단가×대(판) ② 내지 : 인쇄물크기기준 면당 색도별 해당절수단가×면수 또는 인쇄기(판)크기기준 해당 색도별 해당절수단가×대(판)수	
인쇄판료		① 표지 : 인쇄판대기준단가(일반적으로 4절)×색도수(국판의 경우 ×0.694) ② 내지 : 인쇄판대기준단가(2절, 전지)×색도수×대(판)수(국판의 경우 ×0.694)	
인쇄비		① 표지 : 용지소요량(연단위)×연당통수×인쇄료(×할증율)(×국배판0.8 또는 국판 0.67)×(양면일 경우 2) ② 내지 : 용지소요량(연단위)×연당통수×인쇄료(×할증율)(×국배판0.8 또는 국판 0.67)×(양면일 경우 2)	
제 본 비		①부수×②면수×③해당조달단가(×할증율)	
		박비(금박, 은박), 동판, 목형, 천공, 코팅비, 형압, 접지 등	
계		①+②+③+④+⑤+⑥+⑦	
일반관리비		⑧순원가×일반관리비 요율(14%이내)	
소 계		⑧순원가+⑨일반관리비	
이 윤		(⑧순원가+⑨일반관리비-①재료비(용지대등))×이윤 요율(25%이내)	
공급가액		⑫합계액	
부가가치세		⑬공급가액×부가세율(10%)	
총 계			

5-1 발주부서

① 발주방침 수립

- 세부사업계획, 계약방법 등 발주방침 수립
- 총사업비는 반드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품의
- ※ 계약심사로 인한 원가절감을 사유로 배정예산을 초과한 집행품의 불가
- 설계용역 발주 시 성과품으로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파일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명기

◆ 설계도서 작성 유의사항 ◆

- 내역서
 - 노무비, 재료비, 경비조서로부터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최종 원가계산서까지 자동연산 되도록 조치된 엑셀파일로 작성
- 일위대가표
 - 노임단가,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기계경비 등은 심사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단가를 적용
 - 일위대가, 노무량 산출서 등에는 비고란에 적용된 품셈조항 등 관련 근거를 명시
- 자재 단가
 -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가격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격정보 등 2개이상 기관의 가격을 조사하고 해당 페이지를 표시
 - 견적가격 적용시 2개이상 업체에서 견적 후 반영하고 견적서 사본 제출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되, 세부상세 자재내역 역시 설계내역서 작성과 동일하게 자동 계산 되도록 작성

② 계약심사 의뢰

○ 의뢰시기

- 공사·용역 : 설계서가 작성되어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직전
- 물 품 : 가격을 조사하여 기초금액을 확정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직전

○ 제출서류

- 공 사 : 심사요청서, 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지반조사 등 과업보고서, 설계도면(Cad파일 포함),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견적서, 기술심사자료 등), 관련 전산파일

※ 설계내역서는 모든 자료가 상호 연동되어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용 역 : 심사요청서, 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과업내용서, 인쇄물산출조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학술연구용역 참여자 이력서 등 심사보조자료), 관련 전산파일

· 물 품

(공 통) 심사요청서, 관련 전산파일, 수의계약사유서

(완 제 품) 산출기초조사서, 과업내용서 또는 규격·사양서 등

(제조·수리) 제조원가계산서, 산출기초조사서, 시방서, 규격서 등

(인 쇄 물) 산출기초조사서, 규격서 등

(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과업내용서 등

(수입물품) 산출기초조사서,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기타 유통여부 등 참고자료 등

③ 계약 의뢰

- 계약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산출금액 재조정 등 설계서를 수정하여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

5-2 계약부서

① 요청서류 검토

- 계약심사 이행여부 확인
- 발주부서 요청내역과 계약심사결과를 비교 검토

② 계약집행

- 계약심사금액에 따른 입찰 집행

5-3 기타 유의사항

-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심사결과를 지속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원가산정이 되도록 조치
- 자체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조달수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
- 외주설계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계약심사기간(10일)이 확보되도록 협조
-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예산관계 등으로 적기에 발주되지 못한 사업을 차후에 발주할 경우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에 대하여 심사 시점 단가로 변경하여 재산정 후 계약심사 의뢰
- 심사서류의 누락 또는 미비 등으로 심사서류의 보완이 요구되어 심사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공문 발송과 동시에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계약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6

계약심사 관련 질의응답

■ 계약심사의 개념은?

-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2조의 내용에서와 같이 '심사 의뢰된 발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주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적정 원가를 재산출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일부 용어상 액면그대로 계약 자체를 심사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계약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 현행 일상감사와 업무가 중복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 계약심사 업무는 심사의 내용이나 기준금액 측면에서 현행 일상감사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부분 중복되므로 계약심사 대상은 본 지침에 따라 일상감사를 계약심사로 갈음해야 할 것임
- ◆ 충청북도는 '08.10.2 일상감사 폐지

■ 계약심사 요청은 언제 하는 건가요?

- 현행 규칙상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음
- 즉, 계약심사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전제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 전에 사전 원가분석을 통한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자체설계 완료 후 또는 용역설계 납품완료 후 심사자의 심사를 거쳐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심사 부서에서 저가심사 후 낙찰자 결정까지 하는지?

- 최저가 입찰시 낙찰자 결정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심사 부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저가심사 후 심사의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는 기능까지만 수행하고 낙찰자 결정은 해당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

■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처리기간이 10일이라고 하면 접수당일 및 공휴일 그리고 보완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 계약심사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접수당일은 산입,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약사무처리규칙에 규정한 보완기간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함

■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조달청 원가검토 의뢰 여부?

- 현행 규칙상에는 '조달청에 원가검토를 요청하여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과-10873호(2009.7.20) 공문 시달한 바와 같이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도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이행한 경우 별도로 조달청에 원가검토를 의뢰할 필요가 없음

계약심사 실무편람

발행일	2009년 12월
발행처	충청북도 회계과
감수	행정국장 신동인 회계과장 정인화
편집	심사1팀장 곽영학 심사2팀장 남기운
제작담당	물품담당 강충모 건축담당 원영성 토목담당 윤기호

